

을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수색 과정이지만 역시 영장 없이 진행된다. 은밀하고 편리하다. 시청 앞에 모인 집회 군중을 감시하기 위해 과거에는 불심 검문을 하고 사복 경찰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시청 앞에서 잡히는 핸드폰 위치 정보만 수집하면 이들의 신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정보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문제이며 신체의 자유 뿐 아니라 모든 인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정보 인권이 제시하는 원칙은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 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얼굴·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용기록과 같은 위치정보, 그리고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기록 등 개인의 모든 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전산화하거나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민 통제 수단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인권이 그려졌듯이, 정보 인권이 저절로 얻어질 리 없다. 앞으로 무수한 싸움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네이스에 대한 전교조의 투쟁은 정보 인권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2. 사례 : NEIS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NEIS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에서 나오는 것 같다.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는 정보화의 '효율성'에 가장 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가 평낸 전자정부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전자정부의 미래상으로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까지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행정, 전자화된 행정정보가 물 흐르듯 유통되는 신속한 행정, 행정정보의 축적 활용을 통한 지식행정 등에 의한 '생산성 있는 행정'"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정보화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이 행정의 효율성에 뒷전일 수 없다. 인권은 정보화라는 명분으로도 희생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NEIS에서만 하더라도 똑같은 '개인 정보 보호'라는 화두에 대하여 정부는 효율성에 뒤따르는 개념으로 치부하거나 사후에 기술적인 '보안'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을 잘 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보안 이상의 문제이다. 이미 1980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나 1990년 UN의 <개인 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천명해 왔다. 이런 원칙들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정보 사회 주요한 정보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OECD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3. 정보 인권의 개념

자기정보통제권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보 인권이며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는 권리 개념

에는 자기정보통제권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정보 공유의 권리, 알 권리와 접근권 등이 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보화 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가 확산되면서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정보화 이전에도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 관련 국제 협약에서 인정되어 온 기본적 인권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의 의지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산업 논리가 그간 마땅한 것으로 인정되어 온 정보의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공정한 이용(fair use) 조차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나 다름없어진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가 특정 국가의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시장 논리로는 정당화되기 힘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공공적인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로 구축되면서 특정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볼 수 있다거나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접근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그리고 접근권은 기존의 권리 개념을 정보화 시대에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권리 개념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존에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러 있었던 프라이버시권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에 대해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편 정보의 접근권은 과거 통신 시설 등 국가의 기반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해진 미디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인권에 대한 보장은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정보 인권을 명확한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올해 12월 UN은 처음으로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의 정보 사회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서에서 정보 사회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선언문 초안에서는 제1항에 "정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UN

현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전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획득과 전달의 권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제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는 국제적 추세이다. 그것은 진정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4. 한국의 현실 :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의 정보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를 크게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대부분의 정부 정보화 정책이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고려 하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 보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규제 권한만 확대해 왔다.

이를테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내용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신문이나 방송도 더 이상 불건전하거나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시대에, 신문이나 방송보다 개방적이라는 인터넷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가 시시콜콜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의 규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옮겨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혹여 인터넷에서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후에 규제할 문제이지 '나쁜 글을 올릴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실명을 밝히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실명제의 노골적인 목적이 인터넷의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 할 때 위헌의 소지도 있다. 어떤 독재 정권도 '나쁜 말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중 전화를 걸 때마다 실명을 밝히라고는 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통신을 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부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민 일만 명의 지문과 얼굴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업계에게 '테스트용'으로 구축해 주는가 하면 핸드폰의 모든 단말기에 '위치추적용' 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향후 여권에 홍채와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꾸로 말하자면 여권 발급을 위해 국민의 홍채와 지문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국가가 정보화의 혜택을 국민을 감시하고 추적하는데 쓰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학자 개리 막스는 전자 감시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무죄인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은행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일단 혐의자로 CCTV에 찍히는 것이고 나쁜 글을 올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 실명제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 전자 감시사회는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되는 사회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받아들일지가 결정된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결과로 고용이 거절되는 등 차별과 배제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근대 국가 이후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했던 전자감시사회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먼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전자정부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는 명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도 밝히지 않고 뚜렷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14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전산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들은 국민이 미성년자일 때 국가가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아 임의로 경찰에 넘겨 평생토록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1999년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인권침해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 등 국민마다 고유하게 주어지는 국민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이자 한번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비공개하거나 국가의 복지 수혜나 통계 목적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방치하면서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개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명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수집·이용하고 이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5. 한국의 과제 :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되어야

1997년 전자주민카드, 그리고 2000년 전자건강카드 논쟁을 거쳤음에도 우리 사회가 비슷한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사회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시바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와 달리 여러 나라가 이미 1980년대부터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기구를 도입해 왔고 전자정부 또한 이런 원칙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구축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우리처럼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맞섰던 호주는 이 논쟁의 끝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라이버시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국민의 정보 인권과 조화시키도록 노력했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나 정보화 기술이 국민의 정보 인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들에서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NEIS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원칙조차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이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전체적인 총론과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보네트워크센터 뿐 아니라 여러 사회인권단체들이 NEIS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주민등록제도, 노동감시 등 증가하고 있는 여러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해 오며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기구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구체적인 법률적 논의도 진행해 왔다. 이제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검토와 토론을 시작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문제를 국민의 인권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전자정부에 대한 법률 등 기본적인 정보화와 관련한 법률들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6. 결론 : 아무리 좋은 정보화라도 인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보화 정책 대다수가 국민의 정보 인권은 커녕 어떤 경우엔 현행 법률로 보장해온 권리조차 무시하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토론, 그리고 제도 개발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이 효율성과 경제 논리에 의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시켰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독재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경고가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 집중적 시스템은 독재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행정 편의론은 역사적으로 종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이런 상황은 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정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NEIS를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제 우리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보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보 인권을 무시한 눈먼 정보화는 결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행이자 이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부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인권적 측면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지적재산권의 개념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왜 지적재산권이 문제인가?

비디오를 볼 때 우리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호환마마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불법 복제 비디오라는 귀여운 만화 속에 담겨진 섬뜩한 경고 문구를 만나게 된다.

한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팔려오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SOHO), 그리고 학교를 거쳤으니, 이제 안방까지 들어올까?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 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은 어찌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으나,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저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단어가 점차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법적 전문가들만의 영역, 혹은 창작자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때로는 기술과 문화의 활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지적재산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무형(無形)의 지적자산(知的資產)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해 발명자나 창작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일 어떤 소설책을 사면 나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소설책 한 권에 국한될 뿐,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인 창작자인 소설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그 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빼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같은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 생산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식과 문화는 사회에 널리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한편으로 창작자에게 유사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부여되며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특허는 산업 기술 분야에 표현된 아이디어(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기간(특허출원 후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저작권과 특허 이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시적인 독점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각 법체계 내에 창작자의 사적이익과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비판

리차드 스탈만(Richard Stallman)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진보네트워크 센터

1. 특허의 현재 경향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업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2. 영업 방법(BM) 특허

원래 영업 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1998년 미 연방고등법원이 어떠한 대상이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이후, BM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BM 특허는 통상 어떠한 기술상의 혁신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 발명의 시행 과정에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BM 특허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 기술은 특허권 없이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수학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준다면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하게 된다.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독점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인터넷이 이미 발전한 선진국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사업 방법을 특허를 통해 독점한다면, 제3세계 국가의 인터넷 산업은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BM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를 둘러싼 반즈앤노블(Barns & Noble)과의 분쟁이다. 국내에서도 진보넷이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사례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특허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 학습, 시험, 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 방법을 단지 웹에 적용한 것일 뿐, 특별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3. 생명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권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대립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도 각 국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은 AIDS의 심각성 때문이다. AIDS에 의해 하루에 8000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AIDS 감염자 중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AIDS 치료약은 이미 개발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열악한 보건 체계로 인해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의 경우, 현재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은 단지 1000-2000명(0.043-0.086%)에 불과하다.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때문이다. 이것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AIDS 치료약의 특허권을 A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그 약품을 함부로 생산할 수 없으며 A사와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A사의 허락이 없이도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다. 특허는 개발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인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 정부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제약회사와 정부가 제3세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강제실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다.

사례 : 글리벡 강제실시

한국에서도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그것인데, 제조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1캡슐에 약 25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하며,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002년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은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번도 강제실시가 시행된 적이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하였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 <http://glivec.jinbo.net> 참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권리의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1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

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2) 창작 환경의 변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수용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 소리바다

소리바다(<http://www.soribada.net>)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는 약 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음악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음반사들은 2001년 1월, 소리바다를 저작권 위반 방조협의로 고소하

였으며, 2001년 8월 검찰은 소리바다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소리바다는 검색 서비스를 중지하였으나, 곧이어 중앙서버가 검색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소리바다 2'를 선보였다.

소리바다의 장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음악파일 교환과 음악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이며, 이는 마치 음악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편집해서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리바다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이다. 소리바다 이슈는 인터넷이 가져온 수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internet.jinbo.net> 참고)

사례 :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갖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2001년 6월과 10월에 다시 상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한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국민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3. 저작권의 성격 변화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낭만적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이 되었을 때,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은 엄청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가 단지 '창작자의 보호'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저작권 소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정보네트워크 센터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소호(SOHO)에 이르기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속의 방식도 불시에 사무실에 들어닥치는 등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브(Adobe) 등 다국적 독점기업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상품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MS 워드를 쓰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MS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보장하기는커녕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작위 단속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폭력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MS 독점의 문제

독점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MS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MS가 윈도라는 독점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MS는 이미 전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 주자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워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명백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후퇴로 인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 유럽 등에서도 MS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

가고, 독점을 규제하려는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MS는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며,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01년 10월 26일 세계 50여개 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윈도 XP는 인터넷 폰, 메신저 등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나아가 MS는 닷넷 전략을 통해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단지 편리성이 제약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윈도와 MS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세계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MS가 통제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S는 웹브라우저의 조작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윈도 XP 출시와 함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운영체제의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MS에 의한 이용자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M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정부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MS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적으로 MS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예를 들어, 윈도 소스 코드의 공개나 회사의 분할과 같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로 독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 운동과 대안 만들기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리차드 스톤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것에 회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그 출발로써, 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톤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고안하였는데, 먼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GPL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현실 법체제이지만, 카피레프트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은?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 구조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는 단지 '법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식과 문화의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실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세째, 카피레프트 운동과 같이 시민사회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오픈 컨텐츠 라이센스(Open Content License), 저작권 기증 운동, 강의록 공개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자신부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표시로 나타내 보자.

1안) Copyright (C) 2000 홈페이지 제작자 이름

: 저작권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표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는 뜻.

2안)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이 홈페이지가 카피레프트임을 구호로 주장하는 표시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참고

유엔 인권교육 10년 (1995-2004),

한국 인권교육의 시작과 과제^{1) 2)}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인권교육을 시작케 한 외부의 자극

○ 세계인권선언: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자각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의 가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공포하였으며, 특히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노력해야 한다(전문 5문단)”고 하였다. 여기서, 인권교육은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의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모든 나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적 관계의 증진”, 그리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유엔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제 26조 1-2항).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은 또한 인류 ‘공동’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세계의 도래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열망으로 공언되어 왔다(전문

1) 다음은 완성된 원고가 아니라 발제를 위한 자료 메모입니다.

2) 제가 발제를 요청받은 내용이 인권교육 분야의 초기활동에 관한 것이라 인권교육10년을 3분하여 초기 1/3에 해당하는 시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시기를 인권교육의 출발기, 다음 1/3시기를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확산기(인권교육전담자의 배치와 훈련, 독자적인 인권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천 등이 시작됨), 다음 시기를 국가인권위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기구 활동의 출발기로 봅니다.

2문단)”는 데서 “모든 인류의 최고의 열망”이라는 것과 “인류의 양심의 유린”이라는 표현은 ‘인권’을 인류 양심의 공동자산이자 공동의 도덕적 정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전문 3문단)”이라는데서 인권교육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전제와 탄압”은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의 부재 내지는 파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질서의 붕괴와 시민 권리의 후퇴를 불러오고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과 평화의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라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나타난 인권교육(section II, paragraphs 78 to 82)

78.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훈련과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79. 각 국가는 문맹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의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80. 국제인권법규와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81. 세계인권대회는 1993년 3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의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채택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과 기타 인권법규들을 고려하여, 각국이 매우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공공정보 보급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82. 각국 정부는 정부간 조직, 국내 제도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인권과 상호관용에 대한 자각이 증대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세계공공정보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국 정부는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보급을 떠맡아야 한다. 국제연합체제의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은 인권분야의 교육과 훈련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규들과 인도주의법에 규정된 기준들과, 이를 기준을 군대, 법집행담당관, 경찰과 보건직 등의 특수집단에게 적용하는 데 관한 특별교육에 대한 각국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인권교육 10개년

의 선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 유엔인권교육10년의 선포

· 핵심문서: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인권교육 - 삶을 위한 교훈(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 - lesson for life) *유엔총회문서 A/51/506/Add.1(www.sarangbang.or.kr에서 한글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유엔총회결의안 49/184(1994년 12월 23일); 95년 1월 1일부터를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으로 선포

· 유엔총회결의안 50/177(1996년 2월 28일);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와 자원 및 훈련센터를 설립할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

· 유엔총회결의안 51/104(1997년 3월 3일); 인권교육을 위한 민간단체와 풀뿌리조직을 장려, 지원, 협력할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

· 유엔총회결의안 54/161(2000년 2월 23일):
유엔인권교육10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것³⁾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조약이행기구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3)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Summary of national initiatives undertaken within the Decade for HRE; <http://www.unhchr.ch/html/menu6/1/initiatives.htm>)

인권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왔다. 여기에는 인권조약의 출판과 한국어로의 번역,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규정의 강화, 인권에 대한 대중강좌와 심포지엄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조약의 배포, 농어촌지역과 함께 중소도시에서 기본적 인권의 선전을 통한 법률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된다.

추가로 한국은 1999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동북아시아 인권교육훈련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워크샵은 한국정부의 협력 속에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조직했으며, 동북아시아 내 자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학교에서의 인권교육발전을 위한 전략과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토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워크샵은 1998년 태헤란에서 합의된 the Asia-Pacific Framework for Regional Technical Cooperation의 후속조치이자 유엔인권교육10년에 기여하고자 조직되었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설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기구는 없다. 국회에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관심이 가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개발되지 않았다. 인권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유엔인권교육10년의 남은 5년 동안에 인권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관련 정부 기구가 이행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계획을 세부화할 책임을 질 것이다.

2000년 7월 24일 제네바, 한국정부 대표부/외교부 인권과/교육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1996년 1월 CRC/C/15/Add.51): 21항.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 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함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 임무를 부여받는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교육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2.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케 한 내부의 자극

○ 아동인권 등 새로운 인권에 대한 발견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부최초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한 아동인권에 대한 민간인권운동의 자각,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초의 법적 제재, 동성애자의 최초의 커밍아웃, 아주노동자들의 최초의 농성 등 이전 시기의 인권운동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들과 새롭게 등장한 인권의 주체들에 대한 관심의 확대⁴⁾

○ 소위 '문민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에 대한 충격: 대표적인 예-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1993년 12월), 소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반인권의식의 노출

○ 인권운동은 분노만으로 된다? : '인권운동은 그냥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인권문제와 대응의 다변화, 인권이론의 연구와 개발, 인권활동가 육성의 문제 제기

4) 당시의 대표적 사건들(인권하루소식 10대뉴스에 다뤄졌던 사건들): 김기웅 순경, 배병성 씨 억울한 옥살이-사라지지 않는 가혹 고문수사/문민정부 출범 첫해 구속자 중 77% 국보법 적용/ UN 인권 위 차별 소위, 종군위안부 특별보고자 임명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활동 성과/ 직업병 대명사 원진레이온, 치료대책 노사 합의/UN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씨 자의적 구금 결정, 석방 권리/케네스 마를 유죄 판결 및 윤금이 공대위 활약 0.7%만이 기소되는 주한미군 범죄에 경종/유엔세계인권대회 25년 만에 열려/<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무너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성장제일주의의 생아/<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가평 두밀분교폐교>-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민주노총 건설>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운동지도자 구속/<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 박삼훈, 조수원 씨 등/<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미봉책에 그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

- 부문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중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인권운동의 독자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노동자, 빈민, 장애인 문제 등 사회권영역으로의 인권운동의 관심 확대 △자료의 축적에 기초한 활동 △대중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킬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의 양성 △국제연대 활동의 강화 등이 과제로 도출

3. 93-95년에 이루어진 주요 시도들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월간세미나 및 공개강좌
- 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 공동의 '국제인권제도교육'
- 전국연합인권위원회의 지역순회 인권교육
- 성공회 대학에서 한국 최초로 대학내 인권강좌 개설, 이후 몇몇 대학에서 개설시작
- 각 대학 법학과, 사회사업학과를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연수 프로그램
- 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에 참여시작: ARRC 주최 '인권교육가를 위한 공동훈련의 장', 유네스코 주최 아시아인권교육 워크샵 등
- 참여적, 활동중심적 인권교육방법론의 도입과 실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중심으로 국내단체들의 인권교육 워크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22개 민간단체들의 공동활동: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주장 등
- 이런 활동들에 기반하여 인권교육교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는 것은 97년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교재를 따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글을 모아 복사본으로 묶은 자료집을 교재로 썼다. 이시기 출판된 책들은 유엔 등에서 낸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있었을 뿐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 이시기 인권단체들에서 인권교육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겸임의 경우도)는 거의 없었다. 각 단체 회원교육이나 대중강좌는 주로 전문가 초청 형태로 이루어졌고, 인권교육 전담자의 기획과 시연에 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4. 이시기 제출했던 주요 과제들

- 인권교육 활동가를 발굴하고 훈련할 프로그램의 개발: 우선 인권단체부터 인권교육 전 담자를 두고 훈련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인권교육 영역에서의 인권단체의 전략 마련: 인권단체에서 인권교육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인권보장 이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획득·유지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는 인식을 국민대중에게 뿌리 내리는데 인권단체가 기여해 왔다면, 이제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인식이 대중 사이에 공유되도록 인권교육을 전략으로 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인권교육 실천 주체간의 협력과 연대: 인권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집합적인 문제제기를 할 중심 단위의 조직 및 인권교육 활동에서 얻어지는 지식, 정보 및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고 공유하는 체계의 수립, 예를 들어 공동자료실 마련 등

위에 열거된 사항을 기반으로 공동실천해야 할 과제로서

- 인권교육이 당면한 현실과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해있는 인권상황을 수집·분석한 지표가 없다. 이러한 지표는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인권교육이 다뤄야 할 영역과 문제제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참여적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재의 개발
- 인권교육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 인권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과 책임기구의 설립 촉구

학교와 인권교육

홍의표(서울창신초등학교, 전교조 서울지부 인권교육국)

2003년, 인권, 교육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 정도에는 꿈쩍도 않는 우리 나라가 내년이면 끝나는 이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동안 인권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각 인권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서는 활동가나 교사, 대학생,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캠프형식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거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인권을 다루어 왔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일치되지 않은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과 견해들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의 인권교육의 중요한 흐름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동안의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의 인권교육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정이나 공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보다는 일시적인 캠프나 워크샵이 중심이 되는 형태였다**. 지금까지 인권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단체들이 주로 소액 후원자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인권교육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리시켜 진행하기에는 일상적인 활동가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활동가가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없었다는 것도 그 동안의 인권교육이 단기적인 캠프나 워크샵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주로 인권단체 활동가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 학생(어린이,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왔다.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국

가기관의 법집행공무원(경찰, 교정공무원) 혹은 별도의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과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교육을 교육에 대한 도식적인 구분만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인권교육은 살아있는 삶이며 투쟁과 같다. 인권은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권교육은 애초부터 필요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인권교육에서도 다른 여타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은 주로 인지적 영역(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라 교육목적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할 경우)에 치우쳐 왔다. 현재까지 인권교육의 성과들이 대부분 출판물 위주의 매뉴얼 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은 주로 세미나와 연구의 성과물이었다.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음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두 가지

우리는 어떻게 인권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어떤 내용으로 인권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후자가 인권교육과정(혹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이 된다면 전자의 경우 인권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과 관계된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인권적인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적인 환경이나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라 할 수 없다. 때문에 인권의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조직하는 과정과 더불어 교육환경을 인권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법으로서의 인권교육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육이라 할 지라도 교수방법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일 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학습자의 정신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주로 결과적인 측면만을 그것도 성취도의 측면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만을 강조해 왔다. 교육의 효과는 오로지 시험을 통한 수치화로 평가되었고 사회 진출의 유리한 교두보를 목표로 하는 대학입시교육과 맞물려 그 정도는 한층 심화되었다. 학생들의 성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학부모의 요구도 그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내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체벌이나 여타의 비인권적 교육방법들에도 눈감아 주었으며 폭력적인 교사를 자칫 엄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둔갑시켜 전통적인 교육자의 전형으로 미화시키기도 하였다. 비단 학부모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열악한 교육 현실을 이유로 폭력적인 체벌이나 비인권적인 교육방법을 합리화시켜온 것 또한 사실이다. 체벌은 언제나 '사랑의 매'였으며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육적 명목으로 허용해 왔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학생을 둘러싼 모든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폭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언론은 때로 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학생들을 교실붕괴, 학교붕괴의 표본으로 삼기도 하다가 때로는 심각한 체벌을 이유로 교사 집단 전체를 폭력적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적어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알고도 침묵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도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벌하는 어떤 법에도 신체에 대한 형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매를 때리거나 고문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다. 아물며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학습자인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체벌이 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단 체벌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모욕을 주는 언어 폭력과 재기의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제도적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인간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한 폭력에 노출되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권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인권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학교 당국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여 감시자와 통제 받는 자로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를 진정한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는 작업을 도와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학교 규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폭력을 지속적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평화 선언(혹은 학교 비폭력 선언)'이 이루어져 모든 교육 주체의 진정한 합의 속에서 학교에서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 주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것은 이미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각 권리 주체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의 위원회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내용으로서의 인권교육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42조를 보면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규약과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단체를 통한 인권교육 워크숍이나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 모임들이 하나 둘 생기도 있으나 아직 교육 현장에서 널리 실천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7차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일부 교과에 형식적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인권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연수조차 받아 보지 못했으며 교사 양성기관에서도 인권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은 다른 학문과 달리 이론적 내용만으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 인권 그 자체가 늘 현실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과도 같다. 때문에 인권 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역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넓어지며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인권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활동과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라든지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조약」은 이미 인권과 관련된 고전이 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낯설기만 한 내용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이해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기 보다 타인과 조화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선과 독단은 타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권은 나만의 인권이며 그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 볼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이 존재함을 알아야 하고 다양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권리는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권리는 주체가 스스로 생취하는 것이지 거저 얹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저절로 얹어진 인권이라 할지라도 쉽게 잊을 수 있다. 모든 권리는 자기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교육

다른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인권교육도 현실의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꼭 학교와 같은 구조화된 교육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천을 통한 직접 경험이라면 인권 교육은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며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학교가 구조화된 교육환경을 통하여 인권의 인지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을 동시에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현장에서 인권의 문제를 경험해보는 것도 인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 중에서 특히 학생의 사회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표현, 결사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런 실천적 의미로서의 인권교육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접근방법

인권교육은 지식의 체계라기보다 가치의 체계, 신념의 문제이다. 때문에 인권은 때로 철학적 논쟁을 동반할 수도 있고, 법적 논쟁이나 정치적 견해차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을 동반한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인권의 가치를 덕목화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권은 고정된 가치규범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과 의식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인권적인 신념체계를 내면화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적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교과로의 통합은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인권적 감수성을 계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인권교육

우리 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다. 자녀가 있는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서 무리한 사교육비는 곧바로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반대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이 아무리 방대해졌다고 해도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교육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입시 제도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길러내는 게 주된 목표인 대부분의 사교육에 현재 공교육이 감당하고 있는 인성지도와 생활지도,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사교육도 '교육'이지만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하는 태도의 이중성이 교육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킨다. 교육의 수혜자로서 교육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격의 도약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좋은 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지 오래다. 요즘 서울 강남의 집 값이 문제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강남의 교육여건을 꼽는다. 결국 강남의 교육 여건이란 입시를 둘러싼 엄청난 사교육 시장에 다름 아니다. 대학 입학만을 교육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학부모들에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사교육에는 대학 입학률 이외에 어떠한 통제나 관심도 두지 않는다.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학원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도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 반대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도 학교 숙제보다는 학원 숙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는 관계도 없는 인권교육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란 어렵다. 결국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인권교육은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친다 해도 학벌문화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학 입학에 대한 맹목적인 행렬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널리 퍼져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환상과 잘못된 목적의식을 바로잡고 학벌문화를 타파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대학의 평준화와 같은 구체적 대안들이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

인권 프로그램 개발의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교사 양성과정에 인권 교육과정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고 교재이며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배우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교육의 대상인 학생이 인권교육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교사 교육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최근 몇 년간 교사들의 자생적인 노력과 실천의 결과로서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과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인권교육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전국의 각 지역마다 자생적인 인권교육 연구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교사집단 전체를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학교 현장을 인권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사들을 바꾸어내는 일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두 번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인권교육에서 지식의 전달이나 실천적 방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선언과 규약들로 인권교육의 목록을 만들고 이미 시도되고 있는 몇 가지 실천방법들과 결합하여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념체계와도 같은 인권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전달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인권적 감수성이다. 이 인권적 감수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인권교육의 큰 흐름을 형성해 온 것은 사실 인권단체들이었다. 그들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실천의 경험들은 학교 현장의 경험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단체의 인권교육활동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지수와도 같은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인권교육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을 논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한 사회단체에서 번역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나온 '인권교육 방법론'에서도 현장활동가와의 연계가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에서 현장활동가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인권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은 주변 환경을 인권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인권이 교육과정상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오로지 학교에서만 통용되는 권리라면 별 의미가 없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두 실현되어야 하고 어느 곳에서나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 연수와 더불어 학부모 연수, 일반 사회 연수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경험의 구조화

담임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이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사에겐 수업 이상의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일년 간 아이들과 함께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 '인권·평화'수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건의 물리적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교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갖게 한다.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고 교실 환경을 인권적인 분위기로 만들며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사 역시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폭력의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론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교육자로서 인권교육이 갖는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다. 인권교육이 이러한 현장의 실천적 경험을 구조화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제는 캠프와 워크샵식의 단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 가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이 따라야 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마련**과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기전망으로 하는 모임(혹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 1) 안정적인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인권교육의 개별화된 대상에 맞는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적소수자 청소년에게는 "성적소수자 이해교육"이나 "자궁심 교육"등이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더불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인 입학이 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이해 교육 등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인권교육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 2) 한국 사회에서 민간운동단체의 재정마련은 여전히 숙제와도 같다. 인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나 국제기구들의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에는 펀드지원단체로부터 간접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금 사용 등의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 3) 현재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인권교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인권운동 단체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과 인권을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부족하기만 하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평가와 인권운동의 대응

워크샵 소개문안입니다.

0 주관 : 새사회연대

0 발제내용

국가인권위원회 2년 어디에 서 있나? - 이창수(새사회연대 운영위원)

1. 문제제기

2. 국가인권위원회 2년의 제단면

- 전략적 목표
- 운영
- 성과 : 성공과 실패

3. 민간부문의 역할 평가

- 상황
- 필요성
- 대응

4. 결론 : 국가인권위원회의 몇 가지 징후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권

- 워크샵 소개-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동은 삶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창살없는 감옥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이동마저도 박탈당한채..."

그래서 우리는 일어섰다.

이동권은 반드시 쟁취해야만 한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이동권은 교육권이다. 이동할 수 없으면 교육도, 노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의 외침이다. 이 외침은 단지 그만의 외침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투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 운동이 단지 소수자만의 운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반세계화와 전쟁반대등 민중운동의 흐름속에서 진보 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워크샵 진행

발제 1 : 인권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이동권

비디오상영 ; 장애인이동권투쟁의 기록을 담은 '버스를 타자'

발제 2 : 진보 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

발제자: 박현 (장애인 이동권연대 사무국장)

2회 인권활동가 대회 연대마당

한국동성애자연합(이하 '한동연') 활동 결과보고와 평가

-사무국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 활동을 중심으로

0. 들어가며

한국동성애자연합은,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의 인력난과 재정난 등이 심각하여 그나마 사무국 끼리끼리를 통해 연대체를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와 끼리끼리가 공동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하기에 이 지면을 빌어 서술하게 될 한동연 활동 결과보고와 평가는 끼리끼리의 활동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짐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 중인 일반 업무(상담 업무 및 제반 단체 운영 업무) 등에 관해서까지 상세히 서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

1. 반(反)성폭력 네트워크 운영

여성 이반 커뮤니티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반성폭력 네트워크를 결성, 운영 중이다. 성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이반 커뮤니티도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명확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반성폭력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실제 사건을 접수받아 해결을 모색하며, '동성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담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상담 업무와 사건 처리 업무 외에, 기존의 '성폭력'과 달리 어떠한 법적 제도적 통로도 가질 수 없는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여성단체나 청소년단체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Website: www.kirikiri.org/network

2. 비주류 여성단체들과의 상설 연대체 결성: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2003년 2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끼리끼리가 '장애여성공감' 그리고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와 더불어 비주류 여성단체 연대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매개로 또 한번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이 존재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구체적인 화두들은 다를지언정 '여성운동진영' 내부에서도 쉽게 주변화되었던 의제들을 다루는 단체들 간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그러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좀 더 힘 있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이 이 사회의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가능했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억압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기도 하다.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이하 '다닮연대')는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를 개최했다. 다닮연대의 세 단체가 각 단체의 특성을 서로 배려하며 자유로운 발언과 몸짓의 장을 열었다. 외부 행사 시의 성소수자 아웃팅 문제와 장애여성의 이동권 문제 등이 행사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고려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세부 진행 사항이 만들어졌다. 비주류 여성단체 연대의 첫 실험으로써, 지난 무지개 시위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게 남아 있다.

현재, 내년 무지개 시위를 위해 각 단체간 소통 경로를 넓힐 수 있는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내부 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뜻을 같이 할 결합 단위들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Website: www.dadam.org

3. 청소년 인권학교

올해로 6회까지 진행된 청소년 인권학교는, 청소년 이반들의 자궁심을 높이는 것을 지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 행사 이후 매해 여름 다양한 형식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왔다. 이 학교의 취지는, 청소년 이반들이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또래 이반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지지받을 곳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인권학교 준비 실무진 일부의 성폭력에 대한 무감함이 몇 차례 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이에 보다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대두되었다. 또한 섬세한 커리큘럼 개발과 참가자들과의 사후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 이반 관련해서는 보다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매체에서 쉽게 넘겨짚는 그/녀들의 생활 패턴 등만 갖고는 그/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 직접 이야기를 들을 창구를 끊임없이 개발해 내야 하며 자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도록 유용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청소년 이반들의 경우, 무수한 정보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생활상의 여러 가지 자기결정권들이 어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심상이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 또는 또래집단 안에서 성정체성을 매개로 자신 스스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다. 청소년 이반 전문 상담 기관이 있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기관 설립이 여전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중이다.

420, '장애인의 날'에서 '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날'이 되기까지

1980년대 초 정치적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독재는 광주민중항쟁과 삼청교육대 등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 속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사회구현'을 내걸고 1981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하게 된다. 장애인들의 가열찬 투쟁의 성과물이나 기념해야 할 어떤 사건도 없이 장애인의 날이 이렇듯 정치적 선전물로 출발했기에 지난 20여년 동안의 기념식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영부인이 단골로 등장해서 동원된 장애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장애인복지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나눠주고, 장애는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극복상'을 수여한다. 평소엔 무관심하거나 이따금 동정적인 기사를 한두 번 내보낼뿐인 각 방송과 언론은 이날 하루동안은 마치 장애인들에게 대단한 관심이라도 있는 듯 종일 방송을 편성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사회전체의 민주화 투쟁 속에서 청년장애인들도 장애인의 문제가 개개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희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속에서 해결하려는 장애인운동이 시작된다. 이는 장애인의 날을 정권이 선사한 전시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의 날로 만들기 위한 외침의 시작이었다.

1989년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 1990년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쟁취결의대회' 등 4월 20일을 전후한 행사들은 장애인문제연구회 '올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하 장청) 등의 청년단체에서 주도하며 치러오다가 이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의 '노동권 쟁취'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로 발전한다.

전장협은 1990년대 초반 '노동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거쳐 1996년부터 '장애인 노동 권리 확보를 위한 범국민 결기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이는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편의시설, 참정권 등 장애인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전장협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단체나 장애대중뿐만 아니라 각 지역 장애인과 민주노총 등의 제 노동·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이 행사를 사회의 많은 양심세력들과 함께하는 틀로 확대시켰으며, 최정환·이덕인 열사 투쟁 등을 통해 장애인 운동을 혁신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998년 전장협이 서울장애인연맹(이하 서장연)과 통합하면서 매년 치러진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난 해 다시 한번 변화, 발전을 이루게 된다. 즉 올림터에서 장청, 전장협, 서장연으로 이어져온 행사의 주체가 수십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을 주축으로 한 대중조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02년 '장애인해방을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일주일동안 계속된 '장애인의 날' 투쟁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뿐만이 아니라 이동권, 참정권, 시설비리 척결, 장애여성 문제 등 사회 각 분야별 차별철폐투쟁으로 치러졌다.¹⁾

2003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1) 김종환, 「장애인의 날을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공간이동》,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2003.4

- △ 4월 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당당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포한다.
- △ 장애인의 이름으로 장애인 차별철폐와 전쟁반대, 과병반대를 선포한다.
- △ 자본의 세상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구조적이 모순을 폭로하고, 선전하는 날로 선포한다.
- △ 진보적 장애운동의 연대투쟁을 모아내고 이후 조직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열어나간다.

라는 목표아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은 각 영역별 요구안을 정리하여 정부부처와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제시된 요구안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리되었다. 그리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은 이 요구안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해결해야 할 제1과제로 밝히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서비스 위주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정하라!

·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노동자의 일 할 권리와 노동 속의 권리 쟁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확대하라! 장애노동자 차별제도를 철폐하라! 장애노동자의 생활권 쟁취!

· [장애인 교육권]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라!

-장애인 학생의 법적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정착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을 제정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라! 건설교통부는 이동보장법률을 직접 입안하라!

· [편의시설 관련]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편의시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라!

· [장애인 여성]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 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가정폭력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전문적인 장애여성 도우미제도를 통해 장애여성의 양육권을 보장하라! 장애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하라! 장애여성의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여성화장실을 설치하라!

·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로 자립생활정책을 집행하라! 자립생활관련 정책을 심의할 자립생활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하라!

· [장애인연금법] 장애연금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수당과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애 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연금법(제도)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추진에 앞서 장애인연금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대책을 강구하라! 현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20만원에서부터 실시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꿔 대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증장애인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 차원에서 기본급여형태의 연금>으로 확대지급하라! 장애인연금법제정으로 사회보장비용을 18% 수준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소비의 증대, 그리고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 [기초법 요구안]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을 확대하라!

-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 [정보접근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 의사소통권을 보장하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라! 학습접근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접근권을 보장하라!²⁾

그러나 공동요구안의 요구안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형태였을 뿐, 총체적인 시각에서 각 요구들을 조직적으로 모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산, 광주, 충북 지역 등에서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있었지만, 역시 전국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420 이후 투쟁의 과정

420 이후 장애인 운동은 각 영역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이동보장법률 입법 추진, 장애연금법 제정 추진 등의 법제정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보, 기초법 요구와 장애인 노동권 쟁취, 편의증진법 개정,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얼마전에 출범한 한국장애인IL(자립생활)단체협의회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 등 아직은 단일 사안별이긴 하지만 전국조직화의 흐름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문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총론의 부재로 인한 사안별 결합, 계기성 사업 등으로 연대사업이 일회성 사업이나 몸대주기식 사업으로 각 단체내에서 소모성 사업으로 인식되고 이는 각 단위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영역별, 사안별로 전개되고 있는 장애인 운동을 전체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가운데 내용을 조직해나가야 하며, 이 과정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을 함께 조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 중심의 운동에서 각 지역 중심의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역 간의 내용적 공유를 통해 장애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2003년 장애인차별철폐부제기념

2)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인차별철폐공동요구안」, 2003. 3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권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선전국장 김기룡

1. 대중교통수단의 발달과 장애의 억압

상품 교환 경제가 활발해지고, 근대적 의미의 교통 수단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되는 점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세계적으로 근대화의 과정은 목적하는 곳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등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의 유통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근대 국민국가 성립을 위해 각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중앙의 통제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가 작동되도록 해야 했는데, 따라서 지역간 교류를 가장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기존의 상품과 노동력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폐쇄적 사회 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 양식을 제공해 주는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국민국가의 성립을 도모했던 자본주의 환경은 당시 산업환경 내에서 제대로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었다. 특히 영국은 종교 자본을 이용해 당시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장애인들을 교외 밖의 시설로 수용하는 등,¹⁾ 노동력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하락된 지위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 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그것은 결국 대중교통시스템의 설계를 노동력 가치가 가장 높게 매겨지는 비장애인 젊은 남성을 위주로 맞추도록 했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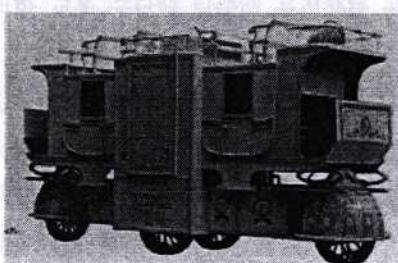


그림 1 1825년 영국 귀족·골즈워즈 경이 만든 증기엔진을 사용한 최초의 버스

대중교통시스템은 발판이 높고 혼들림이 심한 전차 또는 열차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버스의 제조가 본격화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만을 중심으로 버스가 제작되었다. 182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버스는 실내에 6명이 타고 지붕에 12명이 타도록 설계된 것으로, 좁은 구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제작되었다.(그림 1²⁾ 참조) 그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 최초의 버스에 오르내리기란, 어지간한 신체적 유연성을 갖지 못한 사람

1) 근세에 들어 중앙집권적 국가의 형성이 진행되면서 장애인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초 영국에서는 「빈민법」에 의해 공적 구빈제도가 마련되어 장애인들은 공적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정신박약자에게도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심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수용보호시설화가 일어났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심신박약자의 범죄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장애인의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장애인은 법적인 보호의 객체로 편입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었다. 권건보, “障礙人의 基本權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p.19.

2) 자동차의 기록 전문 사이트로부터 (<http://dwaj.com.ne.kr/record/record.htm>)



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28년경 일본에서 들여온 10여대의 버스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구조를 보면 좁은 차량 안에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³⁾

그림 2 1928년 경성에 투입
된 최초의 버스

이동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봉건 사회에서는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점수매기지 않았다. 오히려 거주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서 - 제도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 한정된 사람들과 교류하는 공동체적 문화 내에서 장애인들은 소외라기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은 봉건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농경 사회에서 집안 일을 거들고, 잡심부름을 도맡아 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경우 맹인들은 점복술, 침구술 등의 전문가로 일하는 등, 나름의 사회적 지위까지 부여받으며 당시 봉건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폐쇄된 사회였기에 특히 이동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동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봉건社会의 특성과 달리 노동의 가치를 일렬로 나열해 이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형성 전략의 특성은 필요한 노동력을 언제든지 투입하고, 이윤이 되는 곳에 어디든 상품을 팔아야 했고, 끊임없는 외부와의 교류 및 확장을 중심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발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열정은 서열화된 노동력 가치 기준에 바탕된 사회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기준은 장애 유무 - 물론 당시 시대적 환경에서 노동력 서열화 기준에 장애라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 나아니, 성별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이중 비장애인 젊은 남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각광받았다. 따라서 이 기준들에서 우위를 갖지 못한 계층은 하등의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는 보편적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은 보편적 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당시 등장한 전차, 기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고 건장한 남성이 아니면 그러한 교통 수단에 탑승해 목적하는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보편적 설계 기준은 이에 적응하지 못한 자를 끊임없이 소외되도록 만들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지, 케인을 짚고 다닌다든지, 목발로 걷는다든지 하는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어린이 등이 나름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의 이용을 저해하도록 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빠른 변화에 대해 최소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중교통시스템은 이미 서열화된 노동에서 소외되어 버린 계층에게 높은 이용요금에 따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라 일컫는 설계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차량의 승하차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은 단지 지역간 물류와 인력을 운반하는 기능을 뛰어 넘어, 타 지역의 문물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하고, 인생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파생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 역시 이미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형태가 되었다.

3) 이후 한국의 버스 자체 생산은 1955년경에 가능했고,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때는 1970년대 이후 도심 내에서 출퇴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을 때였다 황상규,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1) : 21세기 대중교통의 역할과 과제”,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p.104.

2. 억압의 문제로 본 이동권

근대 자본주의 및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 뜻을 톡톡히 해냈던 대중교통수단은 노동력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의거해 보편적 설계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그 기준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은 대중교통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했고,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특히 장애로 인해 이미 내재화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억압의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억압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의해 비롯된다. 사회적 통념, 편견,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구조 등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억압의 층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형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가난, 소외, 상대적 박탈감, 의존화 경향 등의 모습을 보이며, 대표적 인권 참상의 대상이 되었다.⁴⁾ 또한 그러한 억압적 환경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언제나 열등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그러한 억압적 환경은 구조적으로 작용해 이들의 경제적 지위마저 최하층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무려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 상태에 처해 있으며 50% 이상의 장애인들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 미국이 ADA법을 통과시키면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장애인의 실업률은 20%대에서 30%까지 치솟는 상황이 벌어지는 실태에서도⁵⁾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장애의 억압은 기존의 억압적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대중교통시스템은 그러한 자본주의 환경 내에서의 억압적 구조에 의해 설계되며, 운용되어 왔다.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력 가치의 평가 기준에 의거해, 비장애인 젊은 남성을 이용 대상자로 설정하고, 이를 보편적 설계 기준으로 정해,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교통시스템의 운용은 정치경제적 구조에 종속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각 사회의 내재화된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의 문화는 각 사회의 문화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본질은 비슷하다. - 장애를 시혜적 관점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과 장애를 격리하고 배제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 것에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러한 편견의 차이가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의 기반 시설을 제작하는데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서구 국가와는 달리 동양적 윤리에 바탕된 장애에 대한 편견은 불교 및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장애인과 약자가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불교의 경우 인과응보의 교리를 통해 금생에서의 불행이나 장애를 전생에서 행한 죄의 결과로 가르쳤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삼강오륜에 기반한 유교 역시 제한된 관계, 즉 윗사람/아랫사람, 가족/혈족, 동문/친구와의

4) James I. Charlton, 'Nothing About Us Without U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 ix

5) H. Stephen Kaye, "Is the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mproving?", 'Disability Statistics Abstract', 장애통계청, 1998년 5월, 2p.

관계 등 세 영역의 관계만을 설정해 다른 인간 관계의 윤리에 대한 덕목은 배제되어 있어, 내집단 중심주의와 상호적 배타주의를 배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⁶⁾ 따라서 대중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반면, 서구 사회의 경우 기독교적 윤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기반해, 장애인에 대한 구체책이 이미 16세기 이후부터 등장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대책 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1, 2차 세계 대전 후 엄청나게 발생한 장애인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공황 등의 피해를 통해 긴급히 마련한 복지국가의 원리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즉 서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풀 목적, 또는 그러한 행위를 미덕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선행이 곧 기독교적 윤리에서 천당으로 가는 길로 인식되었던 것만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이 미국이나 영국의 도심에 갔을 때, 버스들이 왜 저리도 바닥에 붙어다닐까에 대해 의아해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 기반되었는 지에 대한 분석이 또 다른 측면에서 역전되어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시혜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평등한가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업률의 차이, 소득의 차이 등의 통계 자료로 보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를게 없다는 것에서 서구 사회의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최선의 것은 분명 아니다. 사실 서양이나 동양 할 것 없이 분명 장애에 대한 억압은 거의 비슷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다를뿐이지, 불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격차의 구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⁷⁾ 특히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억압은 일부 서구 사회가 해소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우 아직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어떤 도시에는 여전히 계단이 높은 버스가 즐비하게 다니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현상은 세계적인 규모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⁸⁾

3.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그럼에도 여전히 평등한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한국의 장애인들은 서구 사회의 대중 교통 시스템을 한없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부러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다음의 한국의 대중교통시스템의 현실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일컫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는 설계 자체부터 교통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버스의 경우 70cm이상이 되는 승차계단,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올라 탈 수도 없게 설계된 좁은 문, 많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바퀴 위

6) 이재서,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이론적 이해", '총신대논집 제17권', 총신대학교, 1998, pp.2-3.

7) James I. Charlton, *Ibid* p.45.

8)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선 버스의 40% 이상만이 저상버스이고, 영국의 경우 모빌리티 버스(Mobility Bus)라 하여 런던 교외의 7개 지역에 운행하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아닌 리프트 장착 버스이고, 1주일에 1-2회 정도만 운행하고 있다. 최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57-68.

에 만들어진 불편없는 좌석 등은 교통약자⁹⁾라 일컫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차에 자신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시, 비록 2004년까지 대부분의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 설치된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는커녕 휠체어 리프트조차도 구비해 놓고 있지 못하다. 지하철 역에서 플랫폼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비장애인 남성조차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이 즐비하게 있고, 플랫폼과 지하철 사이의 단차가 커 보폭이 좁거나 기타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단차 사이에 끼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전연결성이 가장 좋고,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택시 역시 그것이 설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증장애인조차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일쑤다.

특히 열악한 이동 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은 법과 제도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 놓지 않은데다, 이동할 권리 를 접근권의 개념으로 해석해 놓았을 뿐,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념으로서의 법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

1997년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1998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¹⁰⁾에서 위에서 문제제기된 장애인 이동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은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¹¹⁾

편의증진법에 제시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할인 제도 적용에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만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또한 이 법 제 51조 1항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응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의 각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ST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를 제공할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ST서비스를 민영버스사업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¹²⁾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 장애인이동권이 최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등이라는 용어에 교통약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정의는 이러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자”

10) 김인재, “장애인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사회과학논총 제5집,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p.11.

11) 배용호, 편의증진법의 개정 과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0.

12)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ST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ST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점차 일반대중교통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ST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¹³⁾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는 상위법으로 갔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은 이러한 상위법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에는 매우 약하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유예기관을 둔다든지,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사실은 헌법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기본법(헌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인 관련 조항은 한 군데도 찾아 볼 수 없기¹⁵⁾ 때문이다. 이는 헌법 상에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독일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¹⁶⁾함으로써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체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도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아가 장애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것의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4. 사회권의 일부분으로서의 이동권

이미 외국의 경우 이동의 권리(the Mobility Right)를 법, 제도 등에 명시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동의 권리를 ‘보행’과 ‘교통수단’ 이용의 권리로 나누어, 교통권(right to transport)으로 분류해 놓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재화의 수송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권리’, ‘교통수단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등 4가지 개념으로 설명해 놓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 도심 지역 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Door-to-door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 System)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국가가 도맡아 해 준다. 호주의 경우 건물에

감스러운 일일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ST서비스의 운영-특히 버스의 구입과 유지의 측면에서-를民間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면 비용 절감이 상당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것조차도 법률상으로 전혀 보장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ST서비스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형식적-끼워 맞추기식의-접근에 불과하다.

13) 이재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장애인 이동권 확보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p.99.

14) 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5) 권건보, *Ibid.*, p.13.

16) 독일 기본법(헌법) 제3조 3항 중,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1994년 헌법 조항에 삽입했다.

의 접근, 정보에의 접근, 이동에 대한 문제 등을 접근권의 개념으로 둑어,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례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해 주는 바가 크지만, 그러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행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특히 미국의 ADAPT(American Disabled for Accessible Public Transit)이라는 단체는 1983년부터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접근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이들은 구속을 감수한 7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미국의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대중교통 수단 접근권과 관련된 긴급한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¹⁷⁾ 이들의 움직임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각고의 투쟁은 이동문제를 포함한 접근권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하나의 제권리로 인정 받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미국의 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권은 국가나 사회를 향해 장애인이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국가나 사회가 이를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의 기반은 단지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위한 제반사회조건의 개선의 차원으로 바라보기보다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지난 미국의 사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제반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는데, 여기에서 접근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 환경이 사회적 차별임을 명시해 놓아, 이제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¹⁸⁾

따라서 이동권은 사회권이다. 직언하면 이렇지만 그 함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권이 이미 자유주의적 정치 환경 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언제나 사회적 차별을 받는 민중의 투쟁에 의해 그 범주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에서, 이동권 역시 그러한 사회권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이동이 근대 자본주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대두하게 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이동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ADAPT라는 미국의 장애인 조직이 버스를 점거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사회적으로 외쳤던 투쟁들은 실제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역시 이와 같은 과정들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차별 받는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사회권 운동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역시 사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감히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인권의 역사는 최소한 인권의 범주를 확장시켜 내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일 것이다. 또한 이미 자유주의 정치사가들에게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어버린 자유권의 문제가 아닌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그 범주를 확대시켜 놓고 있는 사회권의 문제에서 이러한 인권의 역사와 관련된 논의는 더욱 풍부하게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17) <http://www.adapt.org> ADAPT는 1990년 이후 이니셜은 놔두고 단체명을 바꿔(American Disabled For Attendant Programs Today) 자립생활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8) 최정원, *Ibid* pp.23-24.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결국 불평등한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 받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요구들이며,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동권은 사회권과 관련된 논의의 과정에 새롭게 포함되는 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권의 범주의 확대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차별 실태인 이동에 대한 권리인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현재의 수준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앞선 이동 보장 정책이 마련되어 질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권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차별 받는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적 힘을 발휘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다소 열악한 전영에서 나름의 활동을 인정받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타당한 권리의 개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이동권 투쟁 역시 사회권의 범주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차별 받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외침을 이끌어내는 등의 치열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진보운동 속에 장애운동의 정체성

박현(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한국 장애운동의 태동

장애운동이 과연 진보성이 내포되어 있는가? 아니면 진보라는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장애운동의 정체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국의 장애운동의 역사는 어디서부터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장애운동의 정체성을 갖을 수 있는 움직임보다는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빈민 운동으로 남아 있었을 뿐 명확한 쟁점을 갖지 못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펼치지 못해 새로운 전영으로서 인정받질 못했었다.

흔히 장판(장애인 운동진영을 비유 줄임말)의 운동역사는 1986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전산과 출신들이 모여 장애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는 동문회 '싹틈'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이 처음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인 장애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전의 상황 달리 싹틈이라는 조직의 탄생은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작게는 복지관이라는 구조와 넓게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장애운동을 확대시켜내는 나름의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시작이었다.

그 후 복지관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삭발 투쟁 및 점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88년 장애인 올림픽의 기만성을 폭로하기 위한 공화당 점거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장애운동을 확산을 시키기 위한 전국 규모의 전국장애인한가족협의회이라는 조직을 결성, 장애인의무고용법 투쟁,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 각 대학에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학교육에 배제하는 이러한 행태에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 내어 장애인 특례입학법 쟁취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밑 바탕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 고 최정환열사¹⁾, 고 이덕인열사²⁾ 투쟁을 만들어내면서 비록 언론과 담론을 확산시키지 못하였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원칙을 지켜내는

- 1) 척수 장애와 교통사고로 인해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인 열사는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가판을 달고 테이프 노점상을 시작하여 삶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초구청의 노점상 탄압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그러한 가운데 95년 3월 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초구청의 살인적인 단속에 장사하는 스피커와 냇데리통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그날 오후 9시 30분경 서초구청을 방문 담당자를 면담 후 압수된 물품을 찾으려 했으나 심한 모멸감만 받고 좌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동지는 결국 9시 45분경에 분신하고 3월 21일에 운명하였다
- 2) 인천시가 휴식공간 목적으로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95년 7월 3일부터 장애인 22명, 빈민 20명과 함께 노점을 시작했고, 이에 구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점 철거를 지시하자 그들은 철탑망루를 설치하여 대항하였다. 11월 24일 드디어 경찰병력과 용역깡패 1,500여명이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하자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강제로 시청밖으로 끌려나왔고,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덕인 열사는 25일 7시 30분경 망루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행방불명되었고, 아암도 앞바다에서 시신은 밧줄로 손이 앞으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양쪽 팔과 얼굴부위에 상처로 간주된 피멍이 든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장애인 문제가 동정과 시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사회복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재 해석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체성을 보다 많은 진영과 연대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짧지만 깊은 침체기

90년 중반부터 장애운동은 조금씩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운동은 80년대 말 전반적인 사회적 혁명운동이 고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을 림픽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정투쟁(양대 법안 쟁취투쟁)의 과정을 통해 대중적 흐름을 창출하며, 그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립회관 등의 장애인 복지관 비리 척결투쟁(90년, 92년), 전체민중운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죄정환, 이덕인 열사 투쟁(95~96년)과정을 겪으면서도 전반적인 조직의 침체와 활동역량의 축소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적 투쟁의 단절과 부재는 운동주체의 재생산에 있어 하나의 필요조건이 상실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급진적·변혁적 장애인운동의 주변화는 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운동의 주체의 재생산 부족과 함께 너무나 열악한 현실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사안을 찾지 못한 체 산발적인 투쟁만 있었을 뿐 전국적인 화두를 만들어 낼 만한 내용들은 만들어 내지 못해 분열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결국 진보운동을 꿈꾸던 조직들은 안정된 길을 택하게 되면서 관료집단으로 변화는 아픈 시간을 보내었다.

그러한 침체기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어쩌면 장애운동이 보다 진보와 변혁이라는 단어에 장애라는 특수한 조건을 점목하지 못한 체 아주 사안에만 치우치는 투쟁 일변도로 인해 대중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들어 난 것이었다.

또한 활동가들도 장애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진보와 변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절하 인간으로 치부되고 명확히 누리고 살아가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계층에 차별의 근원이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사실에 명확히 알지 못했었다.

90년대 장애인 관련한 법안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의무고용법, 장애인편의진증법, 장애인특례입학제도 등 기타 장애인 법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당사자들의 투쟁의 힘으로 만들어 냈다기 보다 정부와 타협에 급급하였고 이로인해 법에 내용 또한 강력한 힘을 갖기 보다는 형식만 갖춘 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냈던 조건들도 그나마 없어진 후 짧은 기간이지만 긴 침체기에 빠졌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쟁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바로 97년 사회복지 법인 기관이었던 평택 에바다 농아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이 폭로되었다. 에바다 사태는 농아원생 당사자들과 당시 몇 명의 교사들이 시청앞에서 벌인 시위로 인해 알려지게 되어 몇몇의 진보단체가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7년간의 지루한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장관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었다.

이동권 투쟁이 일어나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만들어진지 6개월만에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두 분의 장애인이 리프트가 추락하여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역시 이때도 소수의 진보단체가 모여 오이도대책위를 꾸리며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였으나 오이도역 사건은 단순히 추락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동정과 시혜적인 대상으로 다시 전락시켜버린 구조적인 문제이고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2001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추어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연대회의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초반의 이동권 투쟁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단체와 소수의 활동가들이 결합한 열악조건이었다. 그러나 시청앞 노숙투쟁, 서울역 천막농성, 선로점거, 도로 점거, 매월 버스타기 투쟁,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식 점거농성 등 3년간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일반 시민들과 사회적 문제로 화두를 만들어 내었으며 진보운동진영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이동권 투쟁이 활발히 이어져 오면서 침체되어 있던 장관 진영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동권 투쟁이 하나의 사안적인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침체기 있던 장관 진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애인운동이 민중운동의 영역과 결합되고, 그 내부에 자신의 자리를 형성해 내는 '과정'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직까지는 장애인운동이 정치조직과 정당으로 표상되는 한국사회 진보운동에 외부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장애민중의 열악한 삶의 현실과 이에 맞선 저항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쉽게 공유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문제와 장애인운동은 이런 투쟁의 계기 속에서 그들에게 '인식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와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정권과 공권력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선 장애인 주체들의 비타협적 투쟁의 모습이, 그리고 여타의 계층에 비해서도 비동시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애민중의 삶의 현실이 민중운동 진영에도 외면할 수 없는 울림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³⁾ 이념이 전해지면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중증장애인들이 현장 투쟁에 결합하면서 그전에 경증장애인 위주였던 흐름이 차별의 가장 노출되어질 수 밖에 없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상에 느껴왔던 이동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더욱 더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생산되어졌다.

진보운동으로 거듭나야하는 과제

이제 장애운동은 분명히 하나의 운동진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장애운동이 과연 진보운동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가?란 물음에 그렇다라고 하기에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다.

3) 자립생활운동은 1970년대 초 미국 최초의 자립생활지원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Berkeley)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장애운동으로 시작되었다
-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

지금 장판 운동이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직접 조직을 만들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조직도 얼마 전 만들어 내었다.

불과 십여년 사이에 혼자서 물도 마시기 어려운 장애들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는데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 장애활동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자립생활의 이념이 복지전문가들과 복지관에서 전해짐에 따라 이제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화 시키고 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립생활운동이 한국의 현실에서 재 구성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문제를 현 제도에서 머무르는 행동들이다. 다시 말해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제외되고 차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법, 무슨 법이 만들어 진다 할지라도 경제특구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제외되는 현 상황처럼 법으로만 강제되고 지켜질 수 없듯이 장애인의 대한 차별은 근원이 바로 지금 사회 구조의 대한 문제이고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립생활은 진정한 장애해방 운동은 제도에 편입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벗어나는 인간해방 운동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투쟁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서...

장애인운동이 진보운동인지 아닌지 판단은 선별로 판단하기 어렵다. 장애인운동 나름대로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차이들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 주체와 대중들이 자신의 조건과 감수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양식의 문제. Minority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나 나름의 문화와 양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장애인운동은 아직 이러한 부분이 고민/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진영과 소통하지 못할뿐더러 장애인은 장애라는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배제와 소외들을 경험하면서 운동 역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만 남아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활동의 양식이 장애인운동이 그대로 반복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계가 장애인운동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진보운동의 속도에 맞추거나 그 틀에 편입되어야만 진보운동이 아니라 장애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색과 논리, 그리고 장애대중의 속도로 진보적 장애운동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다.